

## ■ 가스류 단가계약 시방서

### ■ 일반사항.

가. 가스류 LHe 외 5종 단가계약 품목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센터(이하 “수도권센터”)에서 사용하는 실험 및 연구용 가스로, 계약업체는 가스의 운반 및 관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량은 추정물량으로 연구원 사용에 따라 증감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수량의 납품은 수도권센터의 지정장소에 납품이 이루어져야 한다.

- 1)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,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내 KBSI 수도권센터(서울)
- 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50 산학협력관 KBSI 수도권센터(서부)

### ■ 자격기준.

가. 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”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득한 업체(나라장터 시스템 업종제한)

나. 관련법령에 따른 배상책임 가입.

다. 안전관리 및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납할 수 없다.

라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에 의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중·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「중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」에 따라 발급된 중·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
※ <중·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.

### ■ 운반 및 운영.

가. 연구원 특성상 당일 납품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차량진동으로 인해 연구에 방해되거나 특정 연구실 접근이 불허된 경우 전용 cart를 사용하여 해당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.

나. 계약업체는 각 연구실에서 필요한 가스용기를 계약기간 내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한다.

### ■ 품질보증 및 공급의무.

가. 공급가스의 순도는 계약서에 명시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이어야 하며, 고순도 가스는 납품시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나. 납품한 가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.
- 다.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 및 액체용기의 수리·부속교체는 납품사항에 포함한다.
- 라. LHe 2,100L는 계약업체에서 NMR장비(총 9대, 장비 1대당 약 년3~4회 주입)에 직접 주입하여야 하며, Quenching 발생 시 장비 복구비용까지 전액 배상하여야한다.

■ 납품방법 및 검수.

- 가. 공급되는 가스는 기간 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센터의 지정된 검수부서에서 각각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나. 액체헬륨가스 납품 시 연구원의 검수장에서 개근 또는 계측한 양을 납품한 것으로 하며, LHe 전용 용기는 사용기간 동안 임대한 후 바로 회수되어야 한다.
- 다. 기타 액체가스의 물량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 계근소의 계량표를 우선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업체가 부담한다.

■ 단가 조정 및 계약 연장.

- 가. 확정된 가스류 단가는 가격 폭등 및 폭락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
- 나. 최초 계약후 1회에 한해 상호 합의에 의해 동일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종료후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